

이야기와 꿈이 많은 성북

2016. 4.

성북문화재단

S E O N G B U K C U L T U R A L F O U N D A T I O N

2016년
제17회 이사회 부의(안)



(재) 성북문화재단



순서



부 의 안

2016-01	2015년도 성북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 결산(안)	06
2016-02	성북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개정(안)	07
2016-03	성북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08
2016-04	성북문화재단 취업 규정 개정(안)	14



부 의 안



01

2015년도 성북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 결산(안)

부의안건 2016-01호

2015년도 성북문화재단의 수입·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 성북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결산서의 제출)
- 성북문화재단 정관 제29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결과

- 감사의견: 『적정』 (감사인: 제원회계법인 이원재, 2016.02.16.)
- 결산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A)	지출액(B)	잔 액(A-B)	
총 계	11,538,793	11,204,059	334,734	
출연금	7,551,036	7,548,575	2,461	구 출연금(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교통지도과)
보조금	2,482,196	2,458,001	24,195	국·시·구비 등 보조금 간주처리예산
자체사업	1,326,998	1,054,843	272,155	영화입장료·대관·임대·강좌 등 시설운영수입
후원금	84,237	48,314	35,923	소액정기·일시·지정 후원금
기타	94,326	94,326	0	보통예금이자수입 및 전년 순세계잉여금

● 출연금 7,551,036천원 = 일반회계(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7,474,739천원 + 특별회계(교통지도과) 76,297천원

※ 잔 액 ----- 334,734천원

- 명시이월(인사평가 등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16년으로 명시이월) : 5,000천원
- 특별회계 집행잔액(교통지도과로 반납) : 2,461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각 교부기관으로 반납) : 24,144천원
- 후원잉여금 : 35,923천원
- 순세계잉여금 : 267,206천원

□ 별첨 : 성북문화재단 2015년 수입·지출 예산 결산(안)

1. 2015년도 수입·지출 예산 결산 보고서(안)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02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 개정(안)

부의안건 2016-02호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남에 따라 예산의 내역변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추진배경

-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전용 및 변경에 대한 적용범위를 구분 하고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과 변경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함

관련근거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2015.7)

기대효과

- 성북문화재단 예산 변경의 적용범위 신설

재무회계 규정 관련규정 개정(안)

- 제15조2(예산의 변경)

현 행	개정 후
제15조 (생략)	제15조 (현행동일)
<u>제15조2 (신설)</u>	<u>제15조2(예산의 변경) 동일 편성목 내 내역의 변경은 전결권자 책임 하에 결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u> (본조신설 2016.04.00.)

03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안)

부의안건 2016-03호

□ **개정내용**

-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 제3장 기구
 - 제15조(직무대행) 성북구청 조직 개편에 따라(2016.3.1.) 소관 국 명칭을 교육문화복지국장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2015.5.27.) 제4장 업무분장
 - 기존의 문화예술교육팀의 명칭을 문화예술전반에 영역을 넓혀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문화기획팀**으로 명칭변경하고자 함
 - 정릉청소년휴카페, 성북도원의 담당부서를 재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정책협력팀 업무의 변경 등으로 경영실적 관리 및 평가를 추가하고, 대표 축제는 각 부서별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신 · 구조문대비표

□ **본 문**

- 직제 및 정원규정
 - 제3장 기구 제15조 (직무대행)

현 행	개정 후
제15조(직무대행) (상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u>교육문화복지국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 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직무대행) (상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u>복지문화국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 시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0.)

※ 개정사유 : 성북구청 조직명칭 변경(2016.03.01.)

- 제4장 업무분장 제17조(문화사업본부)

현 행	개정 후
<p>제17조(문화사업본부) ① 문화사업본부장은 <u>문화예술교육팀</u>, (하략) (개정 2015.05.27.)</p> <p>1. 성북예술창작터(성북구립미술관 분관) : <u>성북예술창작터</u> 전시·기획·보관 등의 운영관리 업무</p> <p>2.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u>문화예술교육팀</u> : (상략), <u>성북도원 운영관리업무 및 전시·대관·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정릉청소년휴카페 운영관리 업무</u></p> <p>가. <u>성북도원</u> : <u>성북도원 운영관리업무 및 전시·대관·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u></p> <p>나. <u>정릉청소년휴카페</u> : <u>정릉청소년휴카페 운영관리업무 및 청소년·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u></p> <p>3. ~ 6. (생략)</p>	<p>제17조(문화사업본부) ① 문화사업본부장은 <u>문화기획팀</u>, (하략) (개정 2016.04.00.)</p> <p>1. 성북예술창작터(성북구립미술관 분관) : 성북예술창작터 <u>및 성북도원</u> 전시·기획·보관 등의 운영관리 업무 (개정 2016.04.00.)</p> <p>2. (현행동일)</p> <p>② (현행동일)</p> <p>1. (현행동일)</p> <p>2. <u>문화기획팀</u> : (상략), <u>성북도원 운영관리 업무 및 전시·대관·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정릉청소년휴카페 운영관리 업무</u> (개정 2016.04.00.)</p> <p>가. 삭제 (2016.04.00.)<u>성북도원</u> : <u>성북도원 운영관리업무 및 전시·대관·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u></p> <p>나. 삭제 (2016.04.00.)<u>정릉청소년휴카페</u> : <u>정릉청소년휴카페 운영관리업무 및 청소년·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u></p> <p>3. ~ 6. (현행동일)</p>

※ 개정사유 : 팀 명칭 변경(문화기획팀)에 따른 규정 반영, 성북도원 관리부서 재편(성북예술창작터), 정릉청소년휴카페 관리부서 재편(정릉도서관)

- 제4장 업무분장 제18조(도서관본부)

현 행	개정 후
제18조(도서관본부) ①·②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5. 아리랑정보도서관팀 가. (생략) 나. (생략) 다. 정릉도서관 : 정릉도서관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업무	제18조(도서관본부) ①·② (현행동일) ③ (현행동일) 1. ~ 3. (현행동일) 4. 아리랑정보도서관팀 (제목개정 2016.04.00.) 가. (현행동일) 나. (현행동일) 다. 정릉도서관 : 정릉도서관, 정릉청소년휴카페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업무 (개정 2016.04.00.)

※ 개정사유 : 정릉청소년휴카페 관리부서 재편(정릉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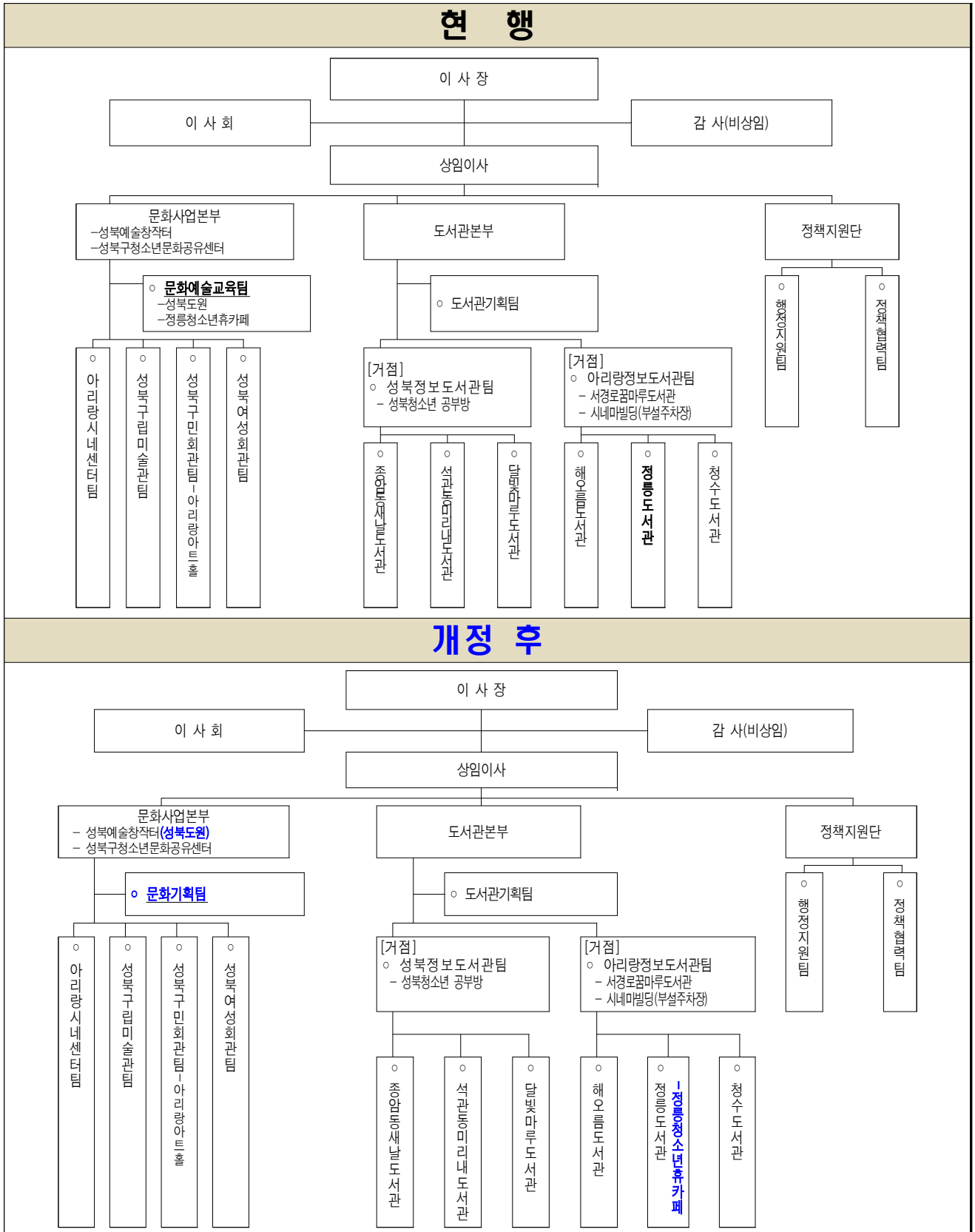
- 제4장 업무분장 제19조의2(정책협력팀)

현 행	개정 후
제19조의 2(정책협력팀) (생략) 1. ~ 3. (생략) 4. 대표축제 기획·운영 5. ~ 7. (생략) 8. (신설)	제19조의 2(정책협력팀) (현행동일) 1. ~ 3. (현행동일) 4. 삭제 (2016.04.00.) 대표축제 기획·운영 5. ~ 7. (현행동일) 8. 재단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및 평가업무 (신설 2016.04.00.)

※ 개정사유 : 대표축제 부서별 사업으로 변경되어 삭제, 경영실적 관리 및 평가업무 신설

○ 별 표

- [별표1] 재단의 기구표(제8조 관련)(개정 2015.5.27.)



- [별표2] 재단의 정원(제8조2항 관련)(개정 2015.12.21.)

현행: 128명									
소 속		계	상임이사	3급/4급	5급	6급	7급	8급	
합 계		128	1	3 10	20	33	45	16	
임 원	소계	1	1						
	임원	1	1						
문화 사업 본부	소계	47		5	6	12	18	6	
	문화사업본부장	1		1					
	문화예술교육팀	5		1	1	1	2		
	아리랑시네센터	15		1	1	3	7	3	
	성북구민여성회관	12		1	1	4	3	3	
	성북구립미술관(성북예술창작터 포함)	8		1	2	2	3		
	청소년문화공유센터	4			1	1	2		
	성북도원(북악산예술체험관)	2				1	1		
도서관 본부	소계	61		6	10	15	20	10	
	도서관본부장	1		1					
	도서관기획팀	4			1	1	2		
	성북도서관거점계	31		2	5	9	10	5	
	성북정보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18			2	6	6	4
		종암동새날도서관	4			1	1	1	1
		달빛마루도서관	5		1	1	1	2	
		석관동미리내도서관	4		1	1	1	1	
	아리랑도서관거점계	25		3	4	5	8	5	
	아리랑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11		1	1	2	3	4
		해오름도서관	3			1		1	1
		정릉도서관(정릉청소년휴카페)	5		1	1	1	2	
		청수도서관	4		1	1	1	1	
		서경로꿈마루도서관	2				1	1	
	정책 지원단	소계	19		2	4	6	7	
행정지원팀		12		1	2	4	5		
전산부문		3			1	1	1		
정책협력팀		4		1	1	1	1		

개정 후: 128명

소 속		계	상임이사	3급/4급	5급	6급	7급	8급	
합 계		128	1	3 10	20	33	45	16	
임 원	소계	1	1						
	임원	1	1						
문화 사업 본부	소계	47		5	6	12	18	6	
	문화사업본부장	1		1					
	문화기획팀	5		1	1	1	2		
	아리랑시네센터	15		1	1	3	7	3	
	성북구민여성회관	12		1	1	4	3	3	
	성북구립미술관(성북예술창작터 포함)	8		1	2	2	3		
	청소년문화공유센터	4			1	1	2		
	성북도원(북악산예술체험관)	2				1	1		
도서관 본부	소계	61		6	10	15	20	10	
	도서관본부장	1		1					
	도서관기획팀	4			1	1	2		
	성북도서관거점계	31		2	5	9	10	5	
	성북정보도서관	성북정보도서관	18			2	6	6	4
		종암동새날도서관	4			1	1	1	1
		달빛마루도서관	5		1	1	1	2	
		석관동미리내도서관	4		1	1	1	1	
	아리랑도서관거점계	25		3	4	5	8	5	
	아리랑정보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11		1	1	2	3	4
		해오름도서관	3			1		1	1
		정릉도서관(정릉청소년휴카페)	5		1	1	1	2	
		청수도서관	4		1	1	1	1	
		서경로꿈마루도서관	2				1	1	
정책 지원단	소계	19		2	4	6	7		
	행정지원팀	12		1	2	4	5		
	전산부문	3			1	1	1		
	정책협력팀	4		1	1	1	1		

04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취업 규정 개정(안)

부의안건 2016-04호

근로기준법 신설 및 시행에 따라 재단의 취업규정도 그 기준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정비하고자 함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법률 제12527호, 2014.3.24. 신설]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①~⑥ 생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3.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3.24.>

※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신설 및 시행에 따라 우리 재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임금 삭감 불가
-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 문서 제출

개정대상 규정

-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절 휴일, 휴가
 - 제25조(모성보호 등) 6에 신설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보장하고자 함

신 · 구조문대비표

□ 본 문

- 취업 규정 개정(안)
 - 제4장 휴일, 휴가 제25조(모성보호 등)

현 행	개정 후
제25조(모성보호 등) (생략) 1. ~ 5. (생략) 6. <u>(신설)</u>	제25조(모성보호 등) (현행동일) 1. ~ 5. (현행동일) <u>6.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은 삭감하지 않는다.(신설 2016.04.00.)</u>